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7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과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3
2.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취소 요건 추가 등	13
3. 유아숲체험원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20
4. 유아숲사랑 지도·교육 사업 및 업무 위탁	23
5. ‘어린이 숲날’ 지정 및 기념행사 등 실시	27

I.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03.

다. 회 부 일 : 2024. 12. 04.

II.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권자를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 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 마.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 불가하고, 지자체 소관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 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사. 어린이가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정안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외의 국유재산 등에 대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등록·등록변경 및 등록취소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청문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에서 “인증”을 “등록”으로 자구수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조·제9조·제21조·제24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u>	<u><삭제></u>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④ ----- ----- - 등록 -----

현행	개정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u>수행하기</u>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8조(<u>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u>) ① (생략)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u>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u>인증이 취소</u>된 자는 3년간 <u>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u> ③ <u>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u> <u><신설></u>	----- <u>지원하기</u> -----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u>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등록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u>-----. ----- <u>등록이</u> ----- ----- <u>등록신청</u>----- -. ③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 <u>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u>----- -----. ④ 제2항에1) <u>산림교육프로그램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u> 1. <u>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 산림</u>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의 <u>인증을</u>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증표시</u>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u>인증을</u>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u>인증표시</u>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u>인증의 유효기간</u>은 <u>인증을</u>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u>인증의 유효기간</u>은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u>할 수 있다. ⑧ <u>인증의</u>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²⁾,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u>인증에</u>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u>인증의 변경 및 취소</u>) ① 제8조제3항의 <u>인증을</u>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u>내용을</u> 변경하려	<u>청장</u> 2. 제1호 외의 <u>국유재산·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시·도지사</u> ⑤ ----- <u>등록을</u> ----- ----- ----- ----- <u>등록표시</u>----- -. ⑥ ----- <u>등록을</u> ----- ----- <u>등록표시</u>----- -----. ⑦ ----- <u>등록의 유효기간</u> <u>은 등록</u>----- ---. <삭 제> ⑧ <u>등록의</u> ----- ----- -- <u>등록에</u> ----- -----. 제9조(<u>등록의 변경 및 취소</u>) ① - ----- <u>산림교육프로그램의</u> <u>등록 내용</u>-----

현행	개정안
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u>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u>산림청장에게</u>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② <u>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u>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인증을 취소</u>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u>인증</u>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인증을</u>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의 <u>인증기준</u>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의 <u>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u>를 한 경우 4. (생략)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u> 등록내용----- --. ----- -----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u>----- -----. ②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u> ----- ----- ----- <u>등록을 취소</u>----- --. ----- <u>등록</u>-----. 1. ----- --- <u>등록</u>----- 2. ----- <u>등록기준</u>----- ----- 3. ----- <u>등록표시와 다르게 등록표시</u>----- 4. (현행과 같음) 제21조(청문)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u>인증</u> 취소 3. ~ 5. (생략)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u>인증</u>을 받은 자 3. ~ 7.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u>인증</u>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u>인증표시</u>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 6. (생략)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u>등록</u> ----- 3. ~ 5.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등록</u> ----- ----- 3. ~ 7.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등록</u>을 ----- ----- <u>등록표시</u> ----- -----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제2항에 따라”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산림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2024년 12월말 기준 총 366개(유효 366건, 만료 301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유아용 163개, 초등생용 68개, 중고생용 36개, 가족용 49개, 일반인용 50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있고,

【 국가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 대상별 현황 】

구 분	계	유아	초등	중고생	가족	일반
프로그램(건)	366	163	68	36	49	50

※ 자료 : 산림청

운영기관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44개, 지자체기관에서 33개, 공공기관에서 53개, 민간단체에서 236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국가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현황 】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프로그램(건)	366	44	33	53	236

※ 자료 : 산림청

2024년 산림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은 595만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314만명 대비 281만명이 증가(90%↑)한 것으로 나타난바,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산림교육프로그램 수요의 양적 확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산림교육프로그램이 국가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됨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미흡하고³⁾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증 절차에 약 9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관련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대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등 제도 변경을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외연을 넓혀 산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했을 경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양산 및 등록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인증제의 경우 획일적 심의 기준으로 인해 다양성 및 창의성을 저

3)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교육프로그램 중 유아숲 교육프로그램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봄은 개구리, 여름은 초록잎 등 계절별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음.

해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증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등록제의 경우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제3자에 의한 전문적·객관적 평가 없이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칫 산림교육의 질적 측면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규제 완화 및 형식적 인증 심의 절차 등을 이유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⁴⁾ 및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⁵⁾ 등은 목재교육프로그램 및 해

-
- 4)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5)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산림교육의 양적 확대에 부응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 및 산림청의 수용의견, 등록제로 전환 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품질 저하에 관한 우려,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법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6조제4항의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에 산림교육에 관한 등록업무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1항제4호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등록에 관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의 업무를 규정한 안 제6조제4항 중 “등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권자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의 등록권자를 “시·도지사”로,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변경 및 취소권자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셋째, 개정안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등록변경·등록취소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산림청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임.

이에 더하여 안 제8조제4항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권자를 각 호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제4항의 내용을 제2항에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취소 요건 추가 등

개정안은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취소 요건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 ----- ----- ----- <u>농림축산식품부령</u> ----- -----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u> 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 ----- <u>제1호 또는 제4호</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 ⑦ (생략)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현행	개정안
	<u>호의 아동·청소년대상 범죄</u> <u>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u>

현행법상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59개소)에서 분야별 산림교육 전문과정(공통 및 분야별 전문과정)을 145~205시간 이상 수료 후 이론 및 실습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⁶⁾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되는데, 2024년 기준 총 33,188명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됨.

6)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산림교육전문가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 명)

구 분	합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합 계	33,188	2,642	2,518	2,824	3,450	2,928	3,112	2,720	2,200
숲해설가	19,791	1,396	1,375	1,354	1,583	1,551	1,592	1,400	1,246
유아숲지도사	10,020	920	831	1,143	1,470	991	1,197	1,067	828
숲길등산지도사	3,377	326	312	327	397	386	323	253	126

※ 자료 : 산림청

그런데 현행법상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⁷⁾ 산림교육 현장에서 유아·청소년을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⁸⁾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이고, 전체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산림교육 참여자 중에서 유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에 이르는 상황이고,

7)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을 발표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산림교육 참여인원 현황 】

(2024년 말 기준, 천명, %)

연도	계	유아	청소년	일반
2024	5,949	2,936(49)	849(15)	2,164(36)
2023	5,673	2,720(48)	892(16)	2,061(36)
2022	5,607	2,947(52)	831(15)	1,829(33)
2021	4,673	2,640(57)	637(13)	1,396(30)
2020	3,137	1,587(51)	413(13)	1,137(36)
2019	6,304	3,073(49)	942(15)	2,289(36)
2018	4,834	2,340(48)	779(16)	1,715(36)
2017	3,776	1,618(43)	721(19)	1,437(38)
2016	2,584	1,083(42)	554(21)	947(37)
2015	2,182	843(39)	446(20)	893(41)

※ 자료 : 산림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⁹⁾ 사회적 약자인 유아·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등이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아·청소년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성범죄자에 대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위헌성 심사기준 중 2단계(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여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엄격한 비례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중 유아숲지도사를 제외한 숲해설가와 숲길등산지도사는 교육 대상이 국민으로서 유아·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림교육 체계 】

대상	세부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협회·단체
유아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유아숲체험원, 유치원 등	유아숲지도사	숲유치원 프로그램	한국숲유치원협회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인 등	산림교육시설, 학교, 휴양림 등	숲해설가	학교숲, 현장체험, 방과후 숲교실 등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성인	일반인, 교사 등	산림교육시설, 휴양림 등	숲해설가	교원 직무연수, 숲해설, 도시숲 등	한국숲해설가협회

※ 자료 : 산림청

10) 국회 법제실,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헌법과 법제」 제15호, 2022. 참조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형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범죄 전과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¹¹⁾

11)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5

3. 유아숲체험원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개정안은 유아숲체험원¹²⁾의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산림으로 간주하고 그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후단 및 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u>산림청장</u>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이 경우 등록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1. <u>산림청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u> 2. ----- - <u>시·도지사</u>

12)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2. (생략) ③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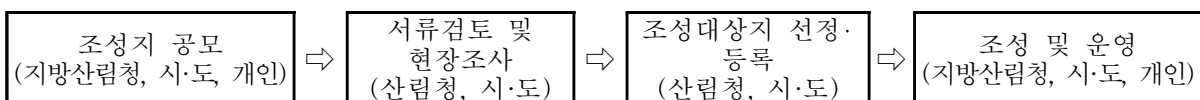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조성할 수 있는데,¹⁴⁾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 이후 지목을 변경하여 목적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의 지목변경을 제한하여

13)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14) 유아숲체험원 조성 절차(산림청)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유아숲체험원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산림교육 활성화라는 이 법의 취지에 기여하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참고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¹⁵⁾에서도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의 용도를 임야 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거나 지자체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신청자와 등록행정관청이 동일하게 되어 등록제도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제2항후단의 ‘등록된 토지’가 의미하는 바도 불명확하므로 조문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유아숲사랑 지도·교육 사업 및 업무 위탁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의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6조의2(유아숲사랑 지도·교육) ① 산림청장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숲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숲 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	제20조(지원) ----- ----- ----- ----- -----. 1. (현행과 같음) 2. -----

프로그램의 <u>인증을 받은 자</u> 3. ~ 6. (생 략) <u><신 설></u>	----- <u>등록을 한</u> ----- 3.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아 <u>숲 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위</u> <u>탁받아 운영하는 자</u>
--	---

2024년 말 기준 산림교육 참여인원을 보면, 유아 294만명(49%), 청소년 85만명(15%), 일반인 216만명(36%)으로, 유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산림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유아 인원은 2015년 84만명, 2018년 234만명, 2021년 264만명, 2024년 294만명으로, 10년 새 3.5배 증가세를 나타냄.

【 최근 10년간 산림교육 참여인원 현황 】

(2024년 말 기준, 천명, %)

연도	계	유아	청소년	일반
2024	5,949	2,936(49)	849(15)	2,164(36)
2023	5,673	2,720(48)	892(16)	2,061(36)
2022	5,607	2,947(52)	831(15)	1,829(33)
2021	4,673	2,640(57)	637(13)	1,396(30)
2020	3,137	1,587(51)	413(13)	1,137(36)
2019	6,304	3,073(49)	942(15)	2,289(36)
2018	4,834	2,340(48)	779(16)	1,715(36)
2017	3,776	1,618(43)	721(19)	1,437(38)
2016	2,584	1,083(42)	554(21)	947(37)
2015	2,182	843(39)	446(20)	893(41)

※ 자료 : 산림청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산림체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숲사랑청소년단”¹⁶⁾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지도·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림교육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 대상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업무에 유아숲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지도·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의 숲사랑 정신 및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규정으로도 유아숲체험원¹⁷⁾을 통해 유아숲지도사¹⁸⁾가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과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유아숲사랑 지도·교육 사업 및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제16조의2제1항 중 “산림”은 숲사랑 지도·

16)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17)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8) 「유아숲체험원 운영 인력 배치 기준」(「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교육의 목적이 숲사랑 정신과 정서함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숲”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산림청도 이에 공감하는 의견임.

5. ‘어린이 숲날’ 지정 및 기념행사 등 실시

개정안은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어린이 숲날) ①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숲날에 기념행사 등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유아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유아가 숲을 체험하고 기념할 수 있는 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개정안은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유아·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끼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2024년 6월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섭씨 22.7도였고, 6월이 1년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라는 점¹⁹⁾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날짜가 유아·어린이의 기념행사 및 숲체험 등 외부활동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6월 9일이 24절기 중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날인 ‘망종’이 있는 주간으로, 숲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싹이 돋고(6: 싹이 나는 것) 뿌리는 날(9: 뿌리가 내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 숲날의 지정에 대하여 수용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어린이 숲날’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숲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입법취지,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게 된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기후양상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19) “자외선 가장 강한 6월…피부암 ‘위험’↑”, KBS, 2024. 6.5.,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유의하세요!”, YTN, 2024.6.16.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참 고 자 료

참고 1

유아숲체험원 개요

□ 유아숲체험원 개요

- (사업목적)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기본개념)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
 - 인공 시설보다는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 조성을 지향하며,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 보다는 ‘숲을 만나고’, ‘숲을 발견하고’, ‘숲과 하나가 되는’ 체험 활동 위주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 유아숲체험원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형식이나 규칙, 통제와 제한은 최소화

□ 사업추진 방법

- 2019년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국비50%, 지방비 50%의 균특회계 편성사업으로 추진
- 2020년부터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선정 및 조성

○ 등록기준

구분	설치요건(등록기준)
입지 조건	▪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위치 ▪ 차량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1km 이내 위치
규모 및 시설	▪ 규모 : 1만㎡ ▪ 야외체험학습장 : 숲체험, 생태놀이 등 공간으로 유아숲체험원 규모의 30% 이상 ▪ 대피시설 :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 ▪ 위험지역에는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 휴게시설 : 화장실, 의자, 탁자 등은 편리한 구조 및 자연친화적인 간이·임시시설
프로그램 및 교구	▪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가 있어야 함 ▪ 비상약품, 간이 의료기구, 소화기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있어야 함
운영인력	▪ 유아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

참고 2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육성 개요

□ 단체 창립일 : 1989. 8월(법인설립 : 1991. 7. 24.)

□ 설립목적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선발·육성하여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요사업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육성과 활동 지원
- 청소년 산림교육·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기술의 연구·교육 및 홍보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 청소년 산림교육·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단원육성

- 등록대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7세~만18세 청소년)
- 학교당 1명 이상의 지도교사 위촉
- 등록기준

-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림환경의 소중함을 배워, 나눔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의지가 있는 올바른 인성을 지닌 청소년

* 학교·동아리 및 대원등록: 애플리케이션 '포유'를 통한 등록